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강동길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696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4월 03일
발 의 자: 강동길, 김성준, 김인제,
박강산, 박승진, 박철성,
봉양순, 송도호, 아이수루,
, 왕정순, 유정희, 이영실,
이원형, 임규호, 정준호,
최기찬 의원(16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개정으로 주민이 손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, 구역제 등을 설정하여 구청장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요청할 수 있는 ‘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 입안요청제’ 등이 도입됨.
- 이에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및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(구청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)을 반영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사항을 반영함(안 제6조제3항)
- 나.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함(안 제9조의2제1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6조제3항 중 “[별표 1] 제4호”를 “별표 1 제5호에”로 한다.

제9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 대하여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“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“은 30퍼센트를 말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·② (생략)</p> <p>③ 영 [별표 1] 제4호 따라 부지의 정형화,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까지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 <u>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</u> <u>해당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</u> <u>구청장에게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토지등소유자의 3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</u></p> <p>② ~ ⑦ (생략)</p>	<p>제6조(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 요건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 <u>별표 1 제5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9조의2(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) ① <u>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에</u> <u>해당하여 영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</u> <u>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</u>은 30퍼센트를 말한다.</p> <p>② ~ ⑦ (현행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개정으로 서울시 관련 부서 문의결과 기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서울시의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제외함(안 제6조제3항, 안 제9조의2제1항)

[출처] 2024년 서울시 예산서

(단위: 천원)

세부사업명	2024년 예산내역
공공정비계획수립	○ 공공정비계획 수립비용 = 7,500,000 250,000,000원*30개소 = 7,500,000천원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